| 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 | **보도참고자료** |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|
|---|---|---|

**2021년 2월 25일(목) 오전 10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**

| 배포일시 | 2. 25.(목) | 담당부서 |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<br>국토부 첨단자동차과 |
|---|---|---|---|
| 담당과장 | 이민우 과장(044-203-4320)<br>이창기 과장(044-201-3848) | 담 당 자 | 주미나 사무관(044-203-4326)<br>이기세 사무관(044-201-3848) |

# 친환경차의 충전 · 주차 · 사용 제도개선 본격 추진

**-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확대 및 전용 충전 · 주차구역 단속 합리화 -**

**- 수소충전소는 도시공원 점용 허용·그린벨트 입지 확대 -**

□ **정부는** 2월 25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개최한 **제5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**(주재 : 경제부총리)에서 **환경친화적 자동차**(이하 '친환경차') **보급 가속화를 위한 핵심규제 개선방안**을 발표하였다.

○ 「미래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('20.10)」 및 「제4차 친환경차 기본계획('21.2.18)」에 따라 **친환경차 사용환경 개선과제**들을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(이하 '친환경자동차법')」 및 동법 시행령 등 **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본격 추진**한다.

## 전기차 충전 · 주차

□ **거주지 · 직장 등 생활거점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기를 확충**한다.

○ **(의무건물) 신축건물**의 경우, **의무설치비율을 현행 0.5%→'22년 5%**로 상향하고, **기축건물**의 경우, '22년 공공 건물을 시작으로 **'23년부터 민간 건물에도 설치 의무(2%)를 부과**한다.(친환경자동차법 및 시행령)

* 의무설치 대상 : 대형마트 · 백화점 · 대기업 소유건물, 아파트(100세대 이상) 등

○ **(설치의무 제외 건물) 연립·주택 등 거주자의 충전 편의**를 위해 국가·지자체·공공기관 등이 구축·운영하는 **공공 충전시설의 개방을 의무화하고, 위치, 개방시간 등 정보공개를 추진한다.**(친환경자동차법)

○ **(노외주차장)** 부대시설로 설치되는 **전기차 충전시설**은 총 시설면적의 **20% 이내에서 설치하도록 한 면적상한을 폐지**한다.(주차장법 시행규칙)

□ **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을 확대한다.**

○ **(공공건물)** 국가, 지자체 등 공공건물은 **'22년부터 총 주차면수의 5% 이상을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**해야 하고,(친환경자동차법)

○ **(노외주차장)** 모든 노외주차장에 **친환경차 전용주차구획을 총 주차대수의 5% 이상 설치**해야 한다.(주차장법 시행령·시행규칙)

□ **전기차 전용구역 주차금지·충전방해에 대한 단속을 강화**한다.

○ **(단속주체)** 전기차 전용 충전·주차구역 **단속주체를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하향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**하고,(친환경자동차법)

* 광역지자체의 단속전담인력 부족(예: 서울시 5명)으로 단속실효성이 낮음

○ **(단속대상) 전기차가 아닌 차량 주차시 단속할 수 있는 충전시설**을 의무설치 된 충전기에서 **모든 공용 충전기로 확대**한다.(친환경자동차법)

- 특히, **완속충전시설**에 대해서도 **충전 시작후 주차를 최대 12시간까지만 허용**하여 **장시간 점유에 따른 불편을 해소**한다.(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)

※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은 의원발의(이장섭의원 2.17, 이학영의원 2.8)

## 수소차 충전·사용

□ **수소충전소 입지 개선 등**을 통해 **구축 속도를 가속화**한다.

○ **(점용·설치 허용) 수소충전소의 도시공원 점용 및 그린벨트 안** 택시·화물차 차고지 등에의 **설치**를 **허용**하고,(도시공원법 등 시행령)

○ **(건축면적 특례) 기존 LPG 등 충전소 부지에 복합수소충전소 구축**시 **건축법상 건축면적 산정완화**를 검토한다.(건축법 시행령)

* 기존 LPG·CNG충전소에 수소충전소 추가시 건폐율(건축면적/대지면적) 제한을 넘겨 구축불가
→ 건축면적 산정 일부완화 검토(현재 공동주택 내 충전시설은 완화 적용(건축법 시행령 §119))

○ **(부담 완화) 전기차 전문정비소**는 **내연기관 정비에 필요한 장비는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시설기준을 완화**하고,(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)

- **수소승용차 운전자**는 **안전교육 대상에서 제외**하여 **대리운전** 등 **수소차 운전의 편의성을 제고**한다.(고압가스법 시행규칙)

□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(박재영 국장)은 **"'21년 친환경차 붐업 확산**을 위해 **국민 생활 및 운행패턴에 맞춘 친환경차 사용자 편의 제고**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"고 강조하였다.

○ 금번 제도개선을 통해 **"우리 주변에 친환경차 충전·주차시설이 대폭 확충될 것으로 기대"**하며,

○ "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관계부처는 **발의된 친환경자동차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연내 통과**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고, **시행령 등 하위법령 시행도 차질없이 준비**하겠다"고 밝혔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주미나 사무관(☎ 044-203-4326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